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557 발의연월일: 2024. 12. 17.

발 의 자:백혜련·김준혁·정성호

이병진 · 서영석 · 소병훈

이기헌 · 김한규 · 송기헌

김기표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적극적 정보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임을 명시하면서도 보호가치가 있는 공익과 개인 등의 이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예외적인 비공개 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이에 공공기관은 해당 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며, 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3년마다 점검하고 그 점검 결과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제출하는 정보공개운영에 관한 보고서에 의무적으로 명시해야 할 사항으로 공공기관의 비공개 세부 기준 및 이에 대한 점검 결과 등이 포함되어있지않아 공공기관의 적극적 정보공개에 대한 관리·감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국회에 제출하는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보고서에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의 점검 결과 등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26조제1항).

법률 제 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은"을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실태
- 2. 제9조제3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범위의 적정성 점검 결과
- 3. 제9조제4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의 점검 결과
- 4. 제24조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 평가
- 5. 제24조제3항에 따른 시정 요구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국회에의 보고) ① <u>행정안</u>	제26조(국회에의 보고) ① <u>행정안</u>		
전부장관은 전년도의 정보공개	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운영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	<u>사항이 포함된</u>		
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			
출하여야 한다.			
<u><신 설></u>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실		
	<u>태</u>		
<u><신 설></u>	2. 제9조제3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범위의 적정성 점		
	<u>검 결과</u>		
<u><신 설></u>	3. 제9조제4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		
	부 기준의 점검 결과		
<u><신 설></u>	4. 제24조제2항에 따른 정보공		
	개제도 운영실태 평가		
<u><신 설></u>	5. 제24조제3항에 따른 시정 요		
	구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